

서울특별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 검 토 보 고

## 1. 경 과

가. 발 의 자 : 이상욱 의원 (찬성자 50명)

나. 의안번호 : 제 789 호

다. 발의일자 : 2023. 5. 30.

라. 회부일자 : 2023. 6. 5.

## 2. 제안이유

기반시설관리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여 효율적·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함.

## 3. 주요골자

가. 위원 임기 규정을 삭제하고, 심의·의결후 위원회를 자동해산하도록 규정(안 제15조제5항)

나. 위원장 소집 규정 삭제(안 제16조제2항)

다. 운영필요성이 낮은 분과위원회 구성 관련 규정 삭제(안 제17조)

##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해당없음

나. 예산조치 : 원안 참조

다. 기 타 : 해당없음

## 5. 검토의견

- 본 개정안은 현행 상설로 운영되고 있는 기반시설관리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여 효율적이며 탄력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관련 조항들(제15조~제17조)을 정비하려는 것임 ([표] 참조).

[표]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5조(기반시설관리위원회 설치 등) ① ~ ④ (생략)</p> <p>⑤ <u>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</u>의 임기는 그 직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.</p> <p>⑥ (생략)</p> <p>⑦ <u>시장은 「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제8조의2에</u>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.</p>	<p>제15조(기반시설관리위원회 설치 등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⑤ <u>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,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한다.</u></p> <p>⑥ (현행과 같음)</p> <p>&lt;삭제&gt;</p>
<p>제16조(위원회 운영) ① (생략)</p> <p>② <u>회의는 위원장의 소집이 있거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</u> 개최한다.</p> <p>③·④ (생략)</p>	<p>제16조(위원회 운영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&lt;삭제&gt;</p> <p>③·④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7조(분과위원회의 구성 등) ① <u>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</u> 전문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.</p> <p>② <u>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며,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</u></p> <p>③ <u>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</u> 수</p>	<p>&lt;삭제&gt;</p>

<p>행한다.</p> <p>1. 위원회의 자문 또는 심의사항에 대한     <u>검토</u></p> <p>2. 위원회의 자문 또는 심의사항에 대한     <u>전문적인 조사·연구</u></p> <p>3. 그 밖에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</p>	
--	--

- **현행 조례 제15조에 따른 ‘서울특별시 기반시설관리위원회’**는 기반시설 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 자문, 최소유지관리기준 설정 심의, 성능개선기준 설정 심의, 기반시설 실태조사 결과 자문 등을 수행할 목적으로 2020년 5월 21일 설치되어 현재까지 상설위원회로 운영되고 있음.
- **기반시설관리위원회**는 총 40명 이내(위원장, 부위원장 각 1명 포함)로 구성하고 있으며, 행정2부시장이 위원장, 안전총괄실장이 부위원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으로 도시교통실장, 재정기획관, 물순환안전국장, 상수도사업본부장, 서울교통공사 사장, 서울에너지공사 사장,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이 참여하고
- 그 밖에 학계, 기업, 민간단체, 시의회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 중 기반시설 관련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를 위원으로 구성하고 있음.
- 그러나 2020년 10월 ‘서울특별시 기반시설 관리계획 수립’ 및 ‘최소유지관리기준 및 성능개선기준 설정’을 위해 2회 개최 이후 2021년과 2022년 2년 연속 관련 안건이 없어 미개최되는 등 개최실적이 극히 저조한 상태임.

- 따라서 그 동안 서울시가 기반시설관리위원회를 운영해 본 결과 기반시설관리위원회의 성격상 기반시설 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 전후에 그 역할이 집중적으로 필요하고 제15조제2항 각호의 심의 및 자문 내용 중 나머지 사항들은 연례적이기보다는 일시적인 사항들에 해당한다는 입장이어서
- 현행과 같이 상설위원회로 운영하기보다는 안 제15조와 같이 안전 발생 시 구성하여 심의·자문기능을 수행한 후에는 자동 해산토록 비상설로 운영함이 보다 효율적일 것으로 사료됨.
- 또한, 개정안은 이와 연동하여 ‘위원의 위촉 해제(제15조제7항)’, ‘위원회 개최요건(제16조제2항)’, ‘분과위원회의 구성(제17조)’ 관련 사항을 삭제하고 있으며 별다른 문제는 없음.